

입 법 예 고

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7월 23일

예 천 군



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농어촌정비법」이 개정되어 제명 및 조문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제명 변경
 - 당초 제명 :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
 - 변경 제명 : 예천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 조례

3. 개정규정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농어촌정비법」 시행령 제24조제3항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- 다. 예산현황 : 해당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마. 입법예고 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(참조 : 건설교통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항목별 의견 : 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 - 보내실 곳 :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)
 - 전화 054-650-6333 팩스 054-650-6339
-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cheon.go.kr/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”를 “예천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조, 제2조제1항, 제3조제1항,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, 제4조, 제8조, 제9조의 제목, 제9조제1항,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15조,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, 제17조제2항, 제18조, 제19조제1항 중 “농촌용수구역”을 “농어촌용수구역”으로 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, 제5조의 제목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, 제7조제1항, 제9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, 제17조제1항, 제17조제1항제1호, 제19조제2항 중 “농촌용수”를 “농어촌용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	예천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농어촌정비법</u> 」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<u>농촌용수구역</u> 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은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·이용·보전·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<u>농촌 용수구역</u>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.	제1조(목적) -----「 <u>농어촌정비법</u> 」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어촌용수 구역</u> ----- 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 <u>농촌용수 구역</u> ”이란 <u>농촌용수</u> 를 공급하기 위한 <u>농촌용수공급</u> 계획상의 구역별·수계별 단위를 말한다. ② “ <u>농촌용수</u> ”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(지표수 및 지하수)를 말한다. ③ <u>농촌용수</u> 구역별·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 <u>농어촌용수 구역</u> ”---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② “ <u>농어촌용수</u> ”----- ----- ----- ----- ③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<u>농촌용수구역</u> 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1. <u>농촌용수구역</u> 의 보전 및 관리 2. <u>농촌용수</u>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. <u>농촌용수</u> 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. <u>농촌용수</u> 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. <u>농촌용수</u> 시설의 관리 6. 기타 <u>농촌용수구역</u>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<u>농촌용수구역</u> 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, 학술단체,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---- --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 1.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2.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3.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4.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5.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6. 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 ② -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제4조(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 군수는 <u>농촌용수구역</u>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<u>농촌용수구역</u>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.	제4조(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 -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----- ----- ----- ② -----<u>농어촌용수구역</u>----- ----- -----
제5조(<u>농촌용수</u>계획 수립) ① 군수는 <u>농촌용수</u>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, <u>농촌용수</u> 공급 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·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5조(<u>농어촌용수</u>계획 수립) ① 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--- -----
제7조(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) ① 군수는 <u>농촌용수</u>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1.~2. (생략) ②~③ (생략)	제7조(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) ① ----- 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--- 1.~2. (생략) ②~③ (생략)
제8조(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) 군수는 <u>농촌용수구역</u>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	제8조(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) -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9조(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<u>농촌용수구역</u>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 1. 용수구역 : <u>농촌용수구역</u> 운영관리위원회 (이하 “운영관리위원회”라 한다) 2. 군 관할구역 : <u>농촌용수구역</u> 군위원회 (이하 “군위원회”라 한다) ② (생략) 1. (생략) 가. <u>농촌용수</u> 이용현황 관리 나. <u>농촌용수</u>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. <u>농촌용수</u> 공급 우선 순위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. <u>농촌용수</u>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. (생략) 2. (생략)	제9조(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<u>농어촌용수구역</u>----- -----, 1. ----- : <u>농어촌용수구역</u>----- 2. ----- : <u>농어촌용수구역</u>-----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나. 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--- 다.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라.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마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심의 조정사항의 준수) <u>농촌용수구역</u>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제15조(심의 조정사항의 준수)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,
제17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① <u>농촌용수</u>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1. <u>농촌용수</u>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<u>농촌용수구역</u>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.~3. (생략) 4. 기타 <u>농촌용수구역</u>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<u>농촌용수구역</u>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17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①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. 1. 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----- ----- 2.~3. (현행과 같음) 4. 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② -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사용제한 등의 공고) 군수는 <u>농촌용수구역</u> 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, 기간, 구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	제18조(사용제한 등의 공고) ----- 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9조(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 군수는 <u>농촌용수</u>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<u>농촌용수구역</u>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<u>농촌용수구역</u> 의 운영 및 관리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. ② <u>농촌용수</u>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	제19조(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 ----- ----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 <u>농어촌용수구역</u> ----- -----. ②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4조(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 군수는 <u>농촌용수</u>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<u>농촌용수</u>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	제4조(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 ---- 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--- -----
제5조(농촌용수계획 수립) ① 군수는 <u>농촌용수</u>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, <u>농촌용수</u>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·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5조(<u>농어촌용수</u>계획 수립) ①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농어촌용수</u> ----- ----- -----
제7조(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) ① 군수는 <u>농촌용수</u>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1.~2. (생략) ②~③ (생략)	제7조(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) ① ----- <u>농어촌용수</u>----- ----- 1.~2. (생략) ②~③ (생략)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〈의견제출〉

입법예고명	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	찬·반 여부	찬·반여부에 따른 의견
	제○조 제○항	찬성	... 이유로 찬성
	제○조 제○항	반대	...이유로 반대 및 ...로(의견제시)

〈의견제출자〉

○ 주 소 :

○ 연락처 : (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)

○ 성 명 : ○○○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